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259 호 2020. 10. 22.(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87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88호[하천 점용사용 허가 고시]..... 2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168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175호[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177호[울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179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180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2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18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제내4길 16-6	신천동 274-1	2020. 10. 22.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0.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188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무 룡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공사 동**지사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촌23* 8

3. 점용 목적 및 개요

인공구조물 설치(전주)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무룡동 935-115번지

나. 면적 : 일시 8m², 영구 0.589m²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일시 : 2020. 10. 19. ~ 2020. 10. 19.

영구 : 2020. 10. 20. ~ 2024.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 - 1168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양성평등기본법」 및 「울산광역시 복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20.9.16. 전부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공무원,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공무원 및 특이(악성·고질)민원에 노출된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특별휴가(치유휴가) 신설

2. 주요내용

- 성희롱·성폭력, 특이(악성·고질)민원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된 피해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치유휴가 신설(안 제24조제2항제9호)

3.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
-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및 제13조의3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1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 출 처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전화 : 052)241-7203, 팩스 : 052)241-7209】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과 신규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성희롱·성폭력, 특이(악성·고질)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그 치료를 위해 치유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8. (생 략) <u><신 설></u>	제2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8. (현행과 같음) 9. <u>성희롱·성폭력, 특이(악성·고질)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u> 공무원은 그 치료를 위해 <u>치유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u>

붙임**관련법령 및 지침 등****[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20.9.16. 전부개정)]

제12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업무·공간분리, 휴가 등 적절한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 피해자 보호대책

- [분리조치] 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격리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보·휴가·재택근무·근무장소 변경·일정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 - 1175호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내지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안 제6조)
- 라.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7조 내지 제12조)
- 마.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안 제13조 내지 제17조)
- 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18조)

3. 관계법령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2항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제2항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제3항

4. 입법문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11.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경제일자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
- 전화번호 : 052-241-7276, 팩스번호 : 052-241-77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마을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
4. 제15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방안
5.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6. 제19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제2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제7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정책·사업의 수립 및 집행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3.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제13조(교육훈련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
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3. 사회적경제조직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훈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경영지원) 구청장은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2.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
3. 제17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제17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제18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심사 및 감독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
 7. 제14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의 건 제 출 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small>(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small>	전화번호	
	주 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1177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조례로 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업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목적(안 제1조)
-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안 제2조)
- 다. 관리책임자의 교육(안 제3조)
- 라. 교육의 위탁(안 제4조)
- 마.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방법 등 교육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9조)
- 바. 교육이수자 관리(안 제10조)
- 사. 교육의 유예 및 면제(안 제11조)
- 아. 교육불참자 조치(안 제12조)

3. 관계법령

-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32조
-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52)241-7334, 팩스번호 : 052)241-7339
- E-mail : ejioh32@korea.kr

5.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①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별로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자가 모든 영업장을 직접 관리하고 해당연도 교육을 직접 이수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복구 내 모든 영업장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협회나 단체(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업무 수행절차, 방법 및 소요경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간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교재, 교육비, 회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과목 및 내용
4. 과목별 교육시간
5.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6. 강사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실시방법) 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제7조(교육교재) 구청장은 제2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

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성 명(단 체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 - 1179호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전담 부서 신설
- 나. 주민 행정 수요에 맞춘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

2.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

- 1) 부서 이관 및 부서명 변경(안 제4조제1항)
 - 행정지원국 징수과 → 기획조정실 징수담당관
 - 행정지원국 부과과 → 기획조정실 부과담당관
- 2) 지방세정 업무 등에 관한 사무 이관(안 제4조제2항제5호)

나. 행정지원국

- 1) 부서 신설 : 교육청소년과(안 제5조제1항)
- 2) 부서명 변경 : 관광해양개발과 → 관광과(안 제5조제1항)
- 3) 부서 이관에 따른 삭제 : 징수과, 부과과(안 제5조제1항)
- 4) 해양개발 사무 삭제 및 관광산업 사무 추가(안 제5조제2항제4호)
- 5) 청소년 사무 이관(안 제5조제2항제5호)
- 6) 지방세정 업무 등에 관한 사무 삭제(안 제5조제2항제6호)

다. 복지환경국

- 1) 청소년 사무 삭제(안 제6조제2항제3호)
- 2) 해양개발 사무 이관(안 제6조제2항제11호)

라. 보건소 : 설치 근거 법률 조항 수정(안 제8조제1항)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라. 제출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 2)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 3) 전자우편(E-mail) : ondine@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회계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을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같은 항 제4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세정 업무 등에 관한 사무

제5조제1항 중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징수과, 부과과”를 “교육청소년과, 관광과, 도서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해양개발”을 “관광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도서관정책”을 “청소년, 도서관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여성아동청소년”을 “여성아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해양수산”을 “해양수산, 해양개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실과”를 “부서”로 하고, “징수과”를 “징수담당관”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실·과장실”을 “부서장실”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보건소장, 동장”을 “2. 보건소장, 문화예술회관장, 동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도서관과장”을 “평생교육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도서관과 평생교육담당”을 “평생교육업무 부서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7조 “도서관과”를 “평생교육업무 부서”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과과장”을 “부과담당관”으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 <u>회계담당관</u>, <u>경제일자리담당관</u>을 둔다.</p> <p>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2. (생략)</p> <p><u>3.</u> (생략)</p> <p><u>4.</u> (생략)</p> <p><u><신 설></u></p>	<p>제4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 ----- <u>경제일자리</u> <u>담당관, 회계담당관, 징수담당관,</u> <u>부과담당관</u>-----.</p> <p>② ----- -----.</p> <p>1. · 2. (현행과 같음)</p> <p><u>3.</u> (현행 제4호와 같음)</p> <p><u>4.</u> (현행 제3호와 같음)</p> <p><u>5. 지방세정 업무 등에 관한 사무</u></p>
<p>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는 총무과, 문화 체육과, <u>관광해양개발과</u>, <u>도서</u> <u>관과</u>, <u>징수과</u>, <u>부과과</u>, 민원지 적과를 둔다.</p> <p>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생략)</p> <p>4. 관광정책, 관광개발, <u>해양개발</u> 등에 관한 사무</p> <p>5.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 <u>도서관</u> <u>정책</u>, 도서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p>	<p>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 --- <u>교육청소년과, 관광과, 도서</u> <u>관과</u>----- -----.</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관광산업</u> -----</p> <p>5. ----- <u>청소년,</u> <u>도서관정책</u>----- -----</p>
<p><u>6. 지방세정 업무 등에 관한 사무</u></p> <p>7. (생략)</p>	<p><u><삭 제></u></p> <p>7.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생 략)</p> <p>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2. (생 략)</p> <p>3. <u>여성아동청소년</u>, 보육, 인구 정책, 출산장려 등에 관한 사무</p> <p>4. 삭 제</p> <p>5. ~ 9. (생 략)</p> <p>10. 삭 제</p> <p>11.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 수산물 유통, 원예축산, <u>해양 수산</u> 등에 관한 사무</p>	<p>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여성아동</u>----- -----</p> <p>5. ~ 9. (현행과 같음)</p> <p>1 1 ----- ----- <u>해양 수산, 해양개발</u> -----</p>
<p>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7조와 <u>같은 법 시행령 제7조</u>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p> <p>② · ③ (생 략)</p>	<p>제8조(설치) ① ----- ----- 「지역보건법」 제10조-- <u>같은 법 시행령 제8조</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118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주민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탄력적 정원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679명

나. 직급별 정원 조정

- 1) 5급 : 증 1명(38명 → 39명)
- 2) 6급 이하 : 증 35명(597명 → 632명)

다. 기관별 정원 조정

- 1) 본청 : 5급 증 1명(23명 → 24명)
- 2)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 변동없음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2)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3) 전자우편(E-mail) : ondine@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643명”을 “67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28명”을 “664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u>679</u>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
일 반 직 계	<u>677</u>	-				
3급	1	1	-	-	-	-
4급	5	4	-	1	-	-
5급	<u>39</u>	<u>24</u>	3	3	1	8
6급 이하 계	<u>632</u>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64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628명</p> <p>2. (생략)</p>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회 사무과</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643</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구청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641</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5</td> <td>4</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38</td> <td>23</td> <td>3</td> <td>3</td> <td>1</td> <td>8</td> </tr> <tr> <td>6급이하 계</td> <td>597</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6급상당 이하 계</td> <td>1</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43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41	-					3급	1	1	-	-	-	-	4급	5	4	-	1	-	-	5급	38	23	3	3	1	8	6급이하 계	597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p>제2조(정원의 총수) ----- ----- 679명 -----</p> <p>1. ----- 664명</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회 사무과</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679</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구청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677</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5</td> <td>4</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39</td> <td>24</td> <td>3</td> <td>3</td> <td>1</td> <td>8</td> </tr> <tr> <td>6급이하 계</td> <td>632</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6급상당 이하 계</td> <td>1</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79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77	-					3급	1	1	-	-	-	-	4급	5	4	-	1	-	-	5급	39	24	3	3	1	8	6급이하 계	632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43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41	-																																																																																																																																																									
3급	1	1	-	-	-	-																																																																																																																																																					
4급	5	4	-	1	-	-																																																																																																																																																					
5급	38	23	3	3	1	8																																																																																																																																																					
6급이하 계	597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79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77	-																																																																																																																																																									
3급	1	1	-	-	-	-																																																																																																																																																					
4급	5	4	-	1	-	-																																																																																																																																																					
5급	39	24	3	3	1	8																																																																																																																																																					
6급이하 계	632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 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 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일반직 36명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인건비 산출 기준 : 2021년도 기준인건비 일반직 단가 적용
 - 70,638천원(일반직 기준 단가) × 36명 = 2,542,968천원
-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 : 3% 증액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구분							
세출	인건비	13,077,135	2,119,140	2,619,257	2,697,835	2,778,770	2,862,133
	소계(a)	13,077,135	2,119,140	2,619,257	2,697,835	2,778,770	2,862,133
세입	인건비	0	0	0	0	0	0
	소계(b)	0	0	0	0	0	0
총비용(a-b)		13,077,135	2,119,140	2,619,257	2,697,835	2,778,770	2,862,133

※ 1차년도 인건비 : 3월 ~ 12월 인건비 산출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협의사항 : 해당없음

6. 작 성 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6급 박정미(241-710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3,077,135	2,119,140	2,619,257	2,697,835	2,778,770	2,862,133
구비	일반회계	13,077,135	2,119,140	2,619,257	2,697,835	2,778,770	2,862,133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해당없음

5.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6급 박정미(241-7102)